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porate Supervisory System-

황동섭*

Hwang, Dong Sub

Abstract

There is considerable interest in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One important reason for the increasing interest in it is that the current system of Korean Corporations is the main cause of weakening competitiveness due to problems such as economic concentration, the concentration of shareholding etc.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within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Korean Corporations, focusing on supervisory system, and to suggest a improvement for it.

I. 서론

오늘의 기업경영 환경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업경영 효율의 경쟁시대로 변모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는 등 기업의 경영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한보의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진로, 기아 등 굴지의 재벌그룹들의 부도로 온 나라가 어지럽더니 급기야 국가경제마저 부도에 직면하여 IMF 구제금융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주도하에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적인 자금배분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다. 수익성 있는 성장기회가 있는 사회에서는 차입경영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고, 기업이 부실화되면 정부는 구제금융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위험을 대신 떠안았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경영의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이러한 관행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입경영과 정경유착에 집착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보의 부도가 정치권과 금융권을 강타한 이후 금융기관에 의한 무차별적인 대출 확수가 이루어졌고, 그 동안 기업 성장에 큰 뜻을 담당했던 은행차입금은 기업의 목을 죄게 되었다. 이제 기업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규모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한 기업공개의 확대 및 회사채 발행,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 등은 기업의 가치가 자본시장을 통해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경영정보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어려워 경영자와 투자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과 내부거래를 통한 결산실적 조작, 주가조작 등이 자주 발생되었다.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을 어렵게 하고 자본비용을 높이게

* 탐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과 오류를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경영성과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를 통해 경영자의 경영능력과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영투명성은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도 기업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6년 4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경영 투명성제고방안을 보면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 강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회계감사)의 기능 보강, 기업 경영에 대한 소수주주의 견제 기능 강화 등 세 가지의 구체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감사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배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을 억제하고 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전통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소유자지배체제로 되어 있으나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감시기능은 취약한 실정이다. 30대 재벌의 경우 평균 8.5%의 가족지분율과 34.5%의 계열사지분율이 결합하여 43.0%(1997년 4월 기준)의 높은 소유집중을 나타내고, 이를 기반으로 총수가 전체 계열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배권집중의 단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경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지배권이 총수 1인에 있는 기업지배체제에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감시기구가 부재하여 도덕적위해(moral hazard)문제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업지배체제에서는 그룹내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내부거래를 통한 한계기업의 보조,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등 기업자금의 유용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는 다수주주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사회 선임이나 의사결정과정이 지배주주에 종속되어 있어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미국기업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년대초 40%미만이던 것이 90년대초 70%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 이사회의 경우 대부분이 경영이사로서 오너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여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의 경우도 대부분 지배주주의 통제 아래 경영진의 업무를 보완하는 경영관리 차원의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독립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상근화 등을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셋째, 시장을 통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영능력이나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M&A의 표적이 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영효율성을 높이게 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관련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소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M&A시장의 미발달로 경영책임을 묻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넷째, 경영권의 세습과 정경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체제는 1인 오너체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와 관행하에서는 경영권이 경영능력에 의하기보다는 소유권의 집중화로 인해 2세에게 세습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지배주주의 전문지식 부족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리더쉽은 대형 기업비리와 선단식의 비관련다각화 등을 초래했으며, 경영 실패의 경우 그 고통이 사회 일반에 전가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단기간 내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업무영역의 할당을 비롯하여

금융자본의 배분 등에 개입하여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정치권력과 기업간의 정경유착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들어서도 철강, 자동차, PCS사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원의 낭비와 자본의 불건전 이용을 초래해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문제점의 대부분은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감시기능의 미흡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와 경제기능의 강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의결기관인 주주총회, 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는 외형상 3권분립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의 내부 지배구조는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상의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해 경영감시가 병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를 내부감사제도, 후자를 외부감사제도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내부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감사제도의 운용실태

상법상 감사는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지배주주 또는 이사로부터 간접을 받지 않고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구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形骸化되어 있으며, 경영자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상의 지배구조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상법상 감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와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그러나 감사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감사의 지위가 독립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회가 자신을 감독할 감사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셈이며, 감사선임의 실제를 보면 전직사용인이나 이사와의 교체 임명, 안배나 정설에 따른 임명, 낙하산식 임명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배주주나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표 1> 감사의 전직경력

구분	사내출신	사회출신			계
		계열사 임직원	타회사 임직원	기타	
인원	370	288	171	127	956
구성비	38.70	30.13	17.89	13.28	100.00

<표 2>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의 선임방법

구 分	전형위원회에서 추천	집행부의 복안을 구두호천	총회장에서 주주들의 개별추천	무응답	계
응답기업수	17	169	1	13	200
구성비	8.5	84.5	0.5	6.5	100.0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 3> 감사의 독립성

감사서류 최종 결재권 소속	대표이사	감사	기타	계
구 성 비(%)	46.2	51.9	1.9	100.0

<표 1>에 나타난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7)의 감사의 전직경력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내출신이 전체의 38.7%를 점하고 있으며, 사외출신 중에서도 계열회사의 임직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1994)에서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집행부의 복안을 구두 호천'하는 방법에 의하며(84.5%), 주주들의 개별추천이나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2>참조). <표 3>에 나타난 전인우·공병호(1995)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감사서류의 최종결재권의 귀속이 감사에게 있는 경우는 51.9%에 불과해 감사의 독립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행상 감사의 보수도 이사회가 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왔다.

외감법 제정 당시 자산총액 30억원이상이거나 자본금 5억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감사가 이루어졌으나, 법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40억원이상으로 대상범위가 변경된 후 다시 1993년에는 자산총액 60억원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외감법상의 회계감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외부감사제도는 투자자 등 외부이용자의 의사결정 정보를 목적으로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제도로서는 본질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다.

셋째, 현행 감사제도가 경영감시장치로서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외부감사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외부감사는 원칙적으로 비상근이라는 점에서 당해 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우며,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 비상근감사만 두고 있는 경우가 전체 기업중 36.13%나 되며(<표 4>참조), 총감사수에서 비상근감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55.94%에 이르고 있어(<표 5>참조) 감사의 충실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4> 감사의 존재유형

구 分	감사가 1명인 회사		감사가 2명인 회사		계	
	감사수	구성비	감사수	구성비	감사수	구성비
상근감사만 있는 회사	239	31.87	21	2.80	260	34.67
상근·비상근 둘 다 있는 회사	-	-	219	29.20	219	29.20
비상근감사만 있는 회사	139	18.53	132	17.60	271	36.13
계	378	50.40	372	49.60	750	100.00

<표 5> 총감사수 대비 상근감사수

구 分	계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감사수	구성비	감사수	구성비	감사수	구성비
'97년도	1,137	100.00	501	44.06	636	55.94
'96년도	1,113	100.00	442	39.71	671	60.29
전년대비 증감	24		59	4.35	△35	△4.35

넷째, 재벌총수나 그룹 기조실이 개별기업들의 경영정책이나 투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초법적인 기구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독이나 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2. 감사제도의 개선

감사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시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경영감시자가 감사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에 정통하여야 하며,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의 변경을 가져오거나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등 감시자가 경영진 통제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결국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사후적인 감시도 중요하지만 상법상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통한 사전적인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감사가 경영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법상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배주주와 이사회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법(이하 '거래법'이라 한다)에서는 감사 선·해임시 대주주는 물론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제한기준은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사케 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수준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는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야 하므로 소수주주가 적임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싶어도 이사회가 추천해주지 않으면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소액주주가 실질적인 감사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주주제안제도의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법은 주주제안제도를 도입하여 6월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이사회에 대하여 주주총회 6주간 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사회는 그 제안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제안제도는 특정 주주의 주관적인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므로 남용될 경우 경영자와 다른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게 마련이므로 주주 제안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주제안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권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소액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서 보유기간은 미국(1년)이나 일본(6월)도 요구하고 있지만 보유주식수는 우리나라 보다 완화되어 있다. 즉 미국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이상 또는 1,000달러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제안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또는 300주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후자의 요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997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수는 763개사이며,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은 각각 8,739,998,156주와 137,361,371,616천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사당 평균 상장주식수는 11,454,781주이고 1사당 평균 시가총액은 180,028,010천원이다. 따라서 소액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사당 평균 114,548주를 7개월 반 동안(6개월 소유 + 주주총회 6주전) 소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약 18억원이 소요된다. 사실상 소액주주는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설정이다. 물론 이 수치는 기업의 규모를 무시한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미국의 1,000달러나 일본의 300주에 비해 너무 높은 요건이다.

셋째, 모든 상장회사에 감사의 상근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의 상근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비상근 감사만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7)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상근감사만 두고 있는 회사가 271개사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36.13%를 차지하고 있고(<표 4> 참조), 총감사수에서 상근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44.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한편 거래법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1인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97년 5월 말 현재 가장 최근 실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상근감사 의무화법인의 수는 523개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상장기업 762개사의 68.64%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6> 참조).

<표 6>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인 법인

구 분	회사수	구성비
자산총액 1,000억 원이상인 법인	523	68.64
자산총액 1,000억 원미만인 법인	228	29.92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사	11	1.44
계	762	100.00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그러나 감사의 직무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사의 업무 집행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사도 당연히 상근을 하면서 일상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감사의 복수화와 사외감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상법상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상이면 족하다. 그러나 감사업무의 효율성면에서 보면 감사는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로 복수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근감사의 경우 회계감사권을 주된 업무로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표 7>를 보면 1사당 평균 감사 수는 1.52명에 불과하며, 상근감사의 수는 1사당 0.6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7> 1사당 평균 상근·비상근감사 수

구 분	계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감사수	1사당평균감사수	감사수	1사당평균감사수	감사수	1사당평균감사수
'97년도	1,137	1.52	501	0.67	636	0.85
'96년도	1,113	1.54	442	0.61	671	0.93
전년대비 증감	24	△0.02	59	0.06	△35	△0.08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우리나라의 현행 감사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회계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사외감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성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감사기능을 회복하여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현 할 목적에서 사내감사의 형해화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와 과반수를 차지하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서 외부의 회계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경영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다섯째, 비상근감사의 자격은 공인회계사로 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감사의 피선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감사는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사는 전문적인 자격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래법은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통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사범대학에서 경영학·회계학·경제학·법학 등을 3년이상 강의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자격 또는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자

상근감사의 대부분은 위 1호에 해당하므로¹⁾ 다른 사외출신 전문가로 비상근감사(또는 상근감사)를 둠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상근감사는 상근감사 보다 기업 내부의 경영정보에 대해 열세일 것이므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외부감사제도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나 외부감사제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내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는 경영통제의 필요에 따라 수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감사에게 이사회소집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감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감사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불법행위 등 사례가 발생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전에 이사회를 먼저 소집하여 이에 대한 보고와 시정을 요구하고, 이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확대가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회계에 관한 부정과 분식을 발견하여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상장회사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감법 제정 당시 외부감사대상의무법인은 자산총액 30억 원이상 이거나 자본금 5억 원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 법 개정에 의해 자산총액 60억 원이상으로 상향되어 많은 기업들이 외감법상의 감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영자의 전횡을 방지하고 올바른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감법 제정 당시의 수준으로 외부감사 의무화대상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회가 자신을 감독하여야 할 감사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제도가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경영감시장치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감사와 감사인간에 회계감사가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의 분담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감사가 공인회계사인 경우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우리나라의 독특한 소유경영체제로 발생한 재벌 총수나 그룹의 기조설이 초법적인 기구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독이나 견제 자체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997년 5월 1일 현재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의무화법인 조항의 첫 적용을 받은 3월 결산사(101개사) 중 설문에 응답한 71개사를 살펴보면 69개사가 상근감사 요건을 충족했고, 그 중 49개사(71.01%)가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결론

최근 기업의 지배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튼튼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이고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줬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좀 더 투명하고 시장중심적이며 더 잘 감독되고 정치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운 경제의사결정이 가능한 포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공표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한국-IMF 구제금융 양해각서(Korea-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 관행과 취약한 건전성 감독이 현 위기의 근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도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96년 4월 24일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완화되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장치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이래 '96년 6월 28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규정 등의 개정 결의를 거쳐 동년 8월 1일부터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포함)와 상장회사간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공시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내·외의 감시기능강화와 소액주주의 경제기능 강화방안은 '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에 각각 반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의 감사제도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와 감사인 선·해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 규정을 현행 3%이상에서 1%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 선임시 소액주주들도 이사회에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소액주주제안제도의 요건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보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째,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근감사의무화법인 규정을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네째, 감사의 수를 복수화하고, 사외감사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상근감사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하고, 회계감사를 주된 업무로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감사의 이사회소집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외부감사의부화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감사의 선·해임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나 추천권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자신을 감사할 감사를 사실상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법적인 기구인 재벌총수나 그룹 기조실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IMF측이 요구하고 있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으로 어느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범위와 개별 기업재무제표와의 회계기준의 통일성, 그리고 법적으로 별도인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와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관계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 감사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경영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와 감사 및 감사인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또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들의 불공정함을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자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진실된 가치가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호, '시장경제체제의 튼튼한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해', 상장협 제35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춘계호.
- 김형준·황동섭,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공업경영학회지 제19권 제38집, 1996. 6.
- 대한상공회의소, 자본자유화시대의 기업소유구조 변화와 법적대응방안, 1996. 12.
- 전인우·공병호,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원, 1995. 9.
- 정준영, '기업경영투명성 제고와 감사제도의 개선', 상장협 제35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춘계호.
- 최병성·정동윤, "상법감사와 외부감사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요지", 상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1.
- 최연혜, 세계화시대의 한국형 기업지배제도의 모색, 산업연구원, 1997. 1.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6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정관기재유형 조사", 상장 제272호, 1997.
- _____, "97년도 상장회사 감사현황 조사", 상장 제272호, 1997. 8.
- 홍복기, "감사기관의 독립성", 상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7.
- Aoi, Joichi, "To Whom Does the Company Belong?" A New Management Mission for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6(1994), pp.25~31.
- Berle, A. A., Jr. and G.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MacMillan, New York, 1932.
- Brancato, Carolyn Kay, "The Pivotal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Capital Markets", *Institutional Investing : The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21st Century*, Arnold W. Sametz ed., 1991.
- Chandler, A. D. Jr., *The Visible Hand :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77.
- Choi, Dosoung., "To Hold Acquisitions, Shareholder Wealth,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6(1991), pp.391~407.
- Gilson, Ronald J. and Mark J. Roe, "Understanding the Japanese Keiretsu : Overlap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Industrial Organization", *The Yale Law Journal* 102(1993), pp.871~906.
- Gordon, Lilli A. and John Pound, "Active Investing in the U.S. Equity Markets :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Paper Presented at the Relation Investing Conference,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May 6~7, 1993.
- Healy, Paul M., Krishna G. Papelu and Richard S. Ruback, "Does Corporate Performance Improve after Merge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1(1992), pp.135~175.

- Jacobs, Michael T., *Short-term America : The Causes and Curses of Our Business Myopia*,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1991.
- Kester, W. C., *Japanese Takeovers : The Global Context for Corporate Control*,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1991.
- Manne, Merger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73 J. Pol. Econ. 110(1965).
- Mikkelsen, Wayne and Richard Ruback,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Interfirm Equity Investment Proces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985), pp.523~553.
- Prowse, Stephen D.,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in Japan", *Journal of Finance* 47(1992).